

#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이은림 의원 외 10명
- 의안번호 : 제1335호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,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추가함(안 제1조)
- 나. 용어 약칭이 생략돼 있어 이를 정비함(안 제3조)
- 다. 위탁기관 규정 각 호 부분을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(안 제3조 각호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탁기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한편, 그 밖에 조례의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문구를 추가하고,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일부 용어를 용어 약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- 안 제3조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<sup>1)</sup>을 준용하여 위탁 가능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.

세부적으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법인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, 현행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<sup>2)</sup>되면서 「한국환경자원공사법」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' 법인이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---

1) 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2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대통령령 제21543호, 2009. 6. 16., 일부개정]